



###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

[시행 2016.8.5.] [국토교통부령 제350호, 2016.8.5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) 044-201-372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.8.13.]

**제1조의2(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)**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7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3.3.23.>

[전문개정 2009.8.13.]

**제2조(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**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0.11.1., 2012.4.13., 2013.3.23., 2015.4.17.>

1. 「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」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
2.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
3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
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사항
5.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
6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
7. 「산지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
8. 「경관법」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
9. 지방자치단체가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

[전문개정 2009.8.13.]

**제3조(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)** 영 제13조제3호에서 "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.>

[전문개정 2009.8.13.]

**부칙** <제350호, 2016.8.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